

# kt cs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제 정	2001.11.29
1 차 개정	2004.04.01
2 차 개정	2004.12.13
3 차 개정	2006.01.16
4 차 개정	2008.04.21
5 차 개정	2008.12.01
6 차 개정	2010.10.27
7 차 개정	2011.04.15
8 차 개정	2012.02.01
9 차 개정	2012.09.12
10 차 개정	2014.05.01
11 차 개정	2015.04.20
12 차 개정	2016.07.16
13 차 개정	2018.05.23

**(주)케이티씨에스**

# kt cs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케이티씨에스(이하 'kt cs'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우선번호안내서비스(이하 '우선번호안내'라 합니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적용) 우선번호안내 이용 등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우선번호안내'라 함은 114 이용자가 114번호안내서비스(이하 '114번호안내'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업종 또는 불특정 상호로 문의할 때 우선번호안내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114 이용자'라 함은 전화번호 안내를 받기 위하여 114번호안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114 번호 DB'라 함은 (주)케이티(이하 'kt'라 합니다)의 114 번호안내 이용약관 제4조의 번호안내 대상을 말합니다.
4. '불특정 상호'라 함은 114 번호 DB에 등록된 다수의 동일 상호나 동일 유형의 상호를 말합니다.
5. '가입고객'이라 함은 우선번호안내를 제공받기 위하여 kt cs에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말합니다.
6. '영업대행사'라 함은 우선번호안내 가입고객 모집, 요금수납 안내, 서비스 신청·변경 및 해지 접수 등 kt cs의 우선번호안내 영업 및 가입고객 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7. '총 회선수'라 함은 114 번호 DB에 등록된 동(읍,면) 구역 업종별 전화회선의 총 개수를 말합니다.
8. '동(읍,면)'이라 함은 (주)케이티(이하 'kt'라 합니다)가 114번호안내를 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안내동을 말합니다.
9. '업종'이라 함은 kt가 114번호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업종분류 체계에 따른 업종을 말합니다.
10. '휴대폰인증계약'이라 함은 우선번호안내 가입을 위해 kt cs가 가입신청 고객에게 '인증번호'와 '계약내용'을 문자로 전송하고 가입신청 고객으로부터 '인증번호'를 회신 받는 방법으로 우선번호안내 이용 신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1. '부가서비스'라 함은 우선번호안내 가입고객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키워드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2장 서비스 제공지역 및 종류

제4조(서비스 제공지역) kt cs의 우선번호안내 제공지역은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충청북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 전라북도,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로 합니다.

제5조(서비스 가입구역) 우선번호안내 가입구역은 동(읍,면), 구(군), 시(광역시,일반시) 단위로 구분합니다.

제6조(서비스 종류 및 가입기간) ① 우선번호안내 종류는 가입구역에 따라 분류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우선번호안내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합니다. 다만, kt cs가 별도 지정한 지역 및 업종으로 가입하는 경우 또는 별도 프로모션 등 우선번호안내 운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 1개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기간은 개통일을 포함하여 최종월에서 기산일(개통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단, 최종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말일을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로 하여 그 전일까지로 합니다.

## 제3장 서비스 가입

제7조(서비스 가입신청) ① 우선번호안내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kt cs 또는 영업대행사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휴대폰인증계약' 또는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신청서 또는 계약 신청 사항이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계약 녹취')

2. 기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동등 자격 증빙서 등 kt cs가 요구하는 서류)

② 가입고객은 '휴대폰인증계약'(또는 신청서 서명, 계약 녹취)과 서비스 요금 납입을 하고, kt cs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③ 기존 가입고객이 당초 제출한 기타 구비서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kt cs는 가입신청 결과에 대해 고객에게 휴대폰문자로 통지합니다. 휴대폰문자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영업대행사 또는 kt cs 고객센터(080-039-0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가입신청 자격) ① 우선번호안내를 가입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는 114 번호 DB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가입 신청하는 전화번호의 정보는 114 번호 DB에 등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우선번호안내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가입 업종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여야 하고, 114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 또는 상품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그 밖의 예외사항은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9조(가입 T/O 산정기준) ① 우선번호안내 가입 T/O 산정은 114 번호 DB의 동일한 동(읍,면) 구역 업종별로 합니다.

② 우선번호안내 가입 T/O는 동일한 동(읍,면) 구역 업종별로 3회선을 기본으로 하고, 총 회선수가 12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총 회선수의 30%(반올림)로 합니다.

제10조(가입고객 선정) ① 우선번호안내 가입고객 선정은 동(읍,면) 구역 업종별로 T/O 범위 내에서 하되 동일 사업자번호에 대하여는 2회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가입고객 선정을 위한 총 회선수의 산정은 전일 자정을 기준으로 114 번호 DB에 반영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 가입고객 선정 후 가입회선 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9조 2항의 가입 T/O를 초과하는 경우 T/O 적용의 예외로서 당해 가입기간 만료 시까지 가입계약이 유효하며, 가입기간 만료 후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휴·폐업 등에 따른 총 회선수 감소로 인한 T/O 초과
2. 행정구역 통·폐합 등에 따른 총 회선수 변동으로 인한 T/O 초과
3. kt 업종분류체계 개정에 따른 총 회선수 변동으로 인한 T/O 초과
4.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총 회선수 변동으로 인한 T/O 초과

④ 우선번호안내 가입 순위는 전산상 가입신청 등록 순으로 합니다.

#### 제4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11조(요금 산정) ① 우선번호안내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월 이용요금의 기준은 제6조 3항의 서비스 가입기간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12조(요금납부) ① 우선번호안내 이용요금은 kt cs가 지정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하여 선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기간을 12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3개월 단위 분할 납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우선번호안내 이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 신청 시 지정한 이메일(e-mail) 주소로 발송합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가입고객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3조(요금의 반환) ① kt cs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우선번호안내를 제공할 수 없거나, 가입 해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요금 중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단, 이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서비스 기간 계산 시 개통일은 포함되고 해지일은 제외됩니다)

②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가입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우선번호안내가 중단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우선번호안내 서비스 이용 중 제17조 제1항 또는 제20조에 해당될 경우 kt cs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후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은 반환됩니다. 다만, 요금 반환과 관련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요금 반환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제5장 서비스 개통 및 변경, 중단 및 제한

제14조(서비스 개통) ① 서비스 개통은 서비스 가입이 승인된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 가입의 경우 가입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신청일(포함)로부터 4일까지 개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가입고객이 재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 종료일의 익일을 개통일로 합니다.

제15조(서비스 변경) ① 기존 가입고객이 당초 가입 신청한 전화번호의 114 번호 DB 등록정보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변경 신청 시에도 가입 신청에 준하여 가입고객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kt cs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16조(서비스 중단) ① 시설관리 및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번호안내를 일부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가 일부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kt cs 홈페이지(www.ktcs.co.kr)에 게시하여 가입고객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kt cs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시스템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우선번호안내 중단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고객은 중단된 기간만큼의 서비스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kt cs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합니다.

제17조(서비스 제한) ① kt cs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우선번호안내 서비스 제공 및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고객이 영위하는 사업이 관련 법률에 의거 서비스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이용 중이라도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3.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비스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제7조 3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가입고객이 당초 가입 신청한 내용(고객정보, 114 번호 DB 등록정보 등), 또는 제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통보 및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21조에 의거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진술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계약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제21조에서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 경우 제21조에서 규정된 기간 다음 날이 해지일이 됩니다.)

② 제20조 1항 4호 내지 7호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가입고객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6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8조(회사의 의무) ① kt cs는 공정하고 안정된 우선번호안내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단, 서비스 특성상 114 이용자 문의내용 및 번호안내 상담과정, 114 번호 DB 등록정보 등에 따라 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kt cs는 가입고객이 본인의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표준화된 양식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③ kt cs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우선번호안내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④ kt cs는 가입고객에 대하여 우선번호안내 건수나 영업 매출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 총 회선수 또는 우선번호안내 가입회선의 증감, 114 이용자 문의내용 및 번호안내 상담과정, 114 번호 DB 등록정보 등에 따라 가입효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kt cs는 우선번호안내 가입 승인 또는 개통으로 가입고객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가입고객의 의무) ① 가입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사실에 근거한 구비서류 확인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신청내용(고객정보, 114 번호 DB 등록정보 등), 또는 제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kt cs 또는 영업대행사에 즉시 통보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kt cs는 가입고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한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가입고객은 제8조 4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114 이용자의 불만이 없도록 용역 또는 상품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고객은 상호 및 업종 등 우선번호안내 가입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⑤ 가입고객은 우선번호안내 가입 승인 또는 개통 후에도 관련 법령 또는 이용약관 등을 위반하거나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분쟁 및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7장 계약 해지

제20조(계약 해지) ① kt cs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고객으로부터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12개월 단위 가입기간 및 3개월 단위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할 납부 기한 내에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17조 1항 1호 내지 3호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가 필요한 경우
4. 제17조 1항 4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통보 및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5. 가입고객이 우선번호안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114 이용자에게 중대한 손해 또는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확인될 경우
6. 우선번호안내를 이용하여 다른 가입고객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안내를 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7. 우선번호안내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또는 구비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8. 기타 가입고객의 부당한 요구 또는 악의적인 민원제기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kt cs 또는 영업대행사, 우선번호안내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21조(해지 전 의견 진술) ①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가입 해지 시 kt cs는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문자, e-mail 등으로 의견 진술 요청을 하여야 하며,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주일 간 kt cs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 의무를 대신합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가입고객이 통지일(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게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8장 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 ① 가입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114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고객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약관과 다르게 제공된 우선번호안내로 가입고객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경우 kt cs는 손해배상 청구자와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액은 우선번호안내 가입고객의 손해가 입증된 이용기간의 이용요금 내에서 정하되 사안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릅니다.

③ kt cs는 가입고객이 우선번호안내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잠재적 이익이나 기회비용 등의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9장 부가서비스

제23조(키워드서비스) ① 114 이용자가 114번호안내를 이용하여 업종 또는 불특정한 상호로 문의할 때 114 번호 DB에 분류되지 않은 별도 지정한 키워드에 대해 안내해 주는 부가서비스입니다.

② kt cs가 별도 선정한 키워드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습니다.

③ 키워드서비스는 우선번호안내 가입고객에 한하여 제공하며, 우선번호안내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키워드 선정 및 키워드 별 가입기준은 114번호안내 및 kt cs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 이외의 규정이 부가서비스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한 부가서비스 규정에 준용합니다.

## 제10장 개인정보 보호

제24조(개인정보 보호) ① kt cs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kt cs 홈페이지 (www.ktcs.co.kr)에 게시한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가입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1장 약관의 개정

제25조(약관 변경) ①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14일 전에 kt cs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전 항의 게시기간 동안 가입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6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호의 “12개월 단위 가입기간 및 3개월 단위 분할납부” 관련 조문은 전산시스템 완료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우선번호안내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요금(VAT 별도)
동(읍,면) 구역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된 '동(읍,면)' 구역으로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제공	30,000원/월
구(군) 구역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된 '동(읍,면)'과 해당 '구(군)' 구역 으로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제공	40,000원/월
시(광역시,일반시) 구역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된 '동(읍,면)'과 해당 '구(군)' 및 '시(광역시,일반시)' 구역으로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제공	50,000원/월

[별표 2]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부가서비스 종류	요금(VAT 별도)
키워드서비스	5,000원/월